

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축진및
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4 .12. 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5. 28

다. 상 정 일 자 : 1999. 5. 28 제6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2차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시설의 설치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환경보전 및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적용범위(제3조)

- 4개 읍면이 공동 사용하는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매립면적 8천 m²이상 1일 소각능력 1톤이상

나. 지역개발에의 반영(제4조)

-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, -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
-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

다. 예산의 편성(제5조)

- 소요되는 예산은 당해년도 일반회계에 편성

마. 사업의 추진(제6조)

- 예산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

바.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·운영(제7조)

-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면 주민중 의회와 군수가 각각 2인을 선정
- 인접 읍면이 포함된 경우 읍면별로 의회와 군수가 각각 1인을 선정

4. 검토결과

■ 먼저 관련법을 검토하여 보면
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등은 폐기물처리시설축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(시설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), 제20조(주민편익시설의설치), 제21조(주민지원기금의구성), 제22조(주민지원기금에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)에 규정되어 있음.

■ 주요내용으로는

- 주변지역에 대한 적용범위는 4개 읍면이상이 공동사용하는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매립면적 8천㎡이상 1일 소각능력 1톤 이상에 대하여 적용되고
- 지원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은 주민협의체와 협의결과에 따라 당해년도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, 본 예산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협의체 구성은

의회와 군수가 추천한 각각2인,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, 지역에서 추천한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

- 군수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,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계획,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을 협의체와 협의하게 되어 있음.

■ 종합검토결과

- 쓰레기매립장 광역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일부 읍면 선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주민의 혐오시설 설치반대로 난항을 겪게되자 설치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보상대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함은 물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서 주민복지증진은 물론 부지확보의 용이성에 따른 환경보전을 병행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.
- 지원에 대하여는 사전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주민욕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지원권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.
- 자구등 기타사항에는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